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93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관련 절차 강화 등	4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69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 21.

(3) 회 부 일 : 2025. 1. 22.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고,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임.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음.

이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공단이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81조제5항 신설).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항 신설).
- 3) 공단으로 하여금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9항 신설).

- 4) 생계형 채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함(안 제81조제10항 신설).
- 5)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함(안 제81조의5 단서).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관련 절차 강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관련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 발송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②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며, ③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을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 규정하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⑤ 보험료 납입 고지(제79조), 체납처분 통보서(제81조) 등을 우편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및 제81조의5).

현행	개정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u>

나. 검토의견

1) 체납처분 사전통보서 발송 시 추가 안내

- 현행법 제81조¹⁾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체납처분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사전적 안내를 강화하여 체납자가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건보공단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여 사전통보서 발송 시 전화통화,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체납액 일부 납부·충당 시 압류 해제

□ 「국세징수법」 제57조²⁾에서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하고, 일부가 납부·충당된 경우에는 내부규정인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라 압류해제를 하고 있음.

□ 개정안 제81조제8항에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건보공단

2)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액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은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은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액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압류에 따른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3) 천재지변 등 체납처분 유예 사유 규정

- 개정안은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³⁾에서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⁴⁾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⁵⁾에 따른 긴급지원대

3)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 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

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이러한 취약계층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긴급한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한 가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체납처분 유예 대상 비교 : 현행 vs. 개정안 >

현 행(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개 정 안
○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건보공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률상 건강보험료 체납 유예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근거로 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다만, 개정안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와 같은 문구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및 보험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규정 신설

□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7)에서는 체납자의 생

7)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보장정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81조제4항⁸⁾에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통보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1조제10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생계형’ 여부와 무관하게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는 이미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만약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가입자 간 형평성 및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과 같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81조제4항의 인용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서류 송달 시 등기우편 사용

□ 현행법 제81조의5에서는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제79조), 독촉장 및 체납처분 통보서(제81조)에 관한 송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되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 참고로 「국세기본법」 10)에 따르면 우편송달의 경우 납부의 고

9)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 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지·독촉·강제징수 등에 관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되, 정기적으로 고지되어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소득세 중간예납¹¹⁾(연 1회)과 일정 세액 미만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연 2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체납처분 통보서 등을 우편송달할 경우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금융재산의 경우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등이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건보공단이 매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서류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안 제81조의5에 따라 서류송달 방식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할 경우 향후 5년 간(2026년~2030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2조 5,705억원의 추가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¹²⁾

5. 서류의 주요 내용

11) 당해연도의 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1월~6월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함.

<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 2026~2030년 >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총 재정소요 (A)	5,802	5,802	5,802	5,802	5,802	29,010	5,802
현행유지 (B)	661	661	661	661	661	3,305	661
12) 추가재정소요 (C=A-B)	5,141	5,141	5,141	5,141	5,141	25,705	5,1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 참고로, 「국민연금법」 13)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에서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우편송달의 대해서는 각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우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체납처분 시 사전통보서 발송에 대하여 추가 안내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체납처분 유예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245호, 허영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체납처분 통보서 관련 추가 안내)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사실을 추가 안내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전화번호 수집·관리가 필수적이거나, 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전화번호 정보가 부재하며 관련 개인정보 수집 권한도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3)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6(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서류의 송달)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체납액 일부 납부 시 압류 해제)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상관없이 체납액 일부 납부 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체납보험료 납부 회피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체납처분 유예 요건 신설) 현재 긴급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재산에 현저한 손실’, ‘사업이 중대한 위기’ 등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사유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체납 증가 및 보험료 수입감소 등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생계형 체납자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는 이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적용 중인 사항이므로, 별도의 개정 실익이 낮음.
- (서류 송달 시 등기우편 사용) 보험료 납입 및 독촉·체납처분 고지는 매월 발송되는 고지서(일반우편)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되어 대상자가 사전에 고지를 예상할 수 있고, 등기우편 전환에 따른 과도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체납처분 통보서 관련 추가 안내) 전화통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한 추가 안내를 위해서는 전화번호 수집이 필수적인데, 전화

번호가 없거나 변경으로 통지를 못할 경우 체납처분 절차 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체납액 일부 납부 시 압류 해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여 보험료 납부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생계형 체납자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개정안의 내용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음.
- (서류 송달 시 등기우편 사용) 건보공단이 발행하는 보험료 고지서는 매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므로 많은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503